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	호
------	---	---

제출년월일 : 2005. 7.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사유

- 노후되고 협소한 무을보건지소를 농어촌특별회계 사업으로 무을면 송삼리 808-2번지에 이전신축 코자함.
- 1993년 출연당시 구미오성문화재단 기본재산으로 2001년 3월 재단에 일부를 양여(잡종지,대지)하고 남은 농지로써 농지법 제6조 재단의 농지소유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시에서 보존·관리한 재산으로 2005년 2월 재단 측의 매각 요구에 따라 재산의 임대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 보다 현금 출연하는 것이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어 매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선산보건소 소관】

(무을보건지소 이전신축)

- 건 물 : 1동 337.2 m^2 (지상 2층)
- 예정가격 : 543,680천원(건물신축 예산)

나. 처분재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구미오성문화재단 잔여 농지매각)

- 토 지 : 20필지 21,878 m^2 (6,618평)
- 예정가격 : 325,726천원 (공시지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illegible]

2005년도 취득(신축)대상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 위 : 천 원, m²)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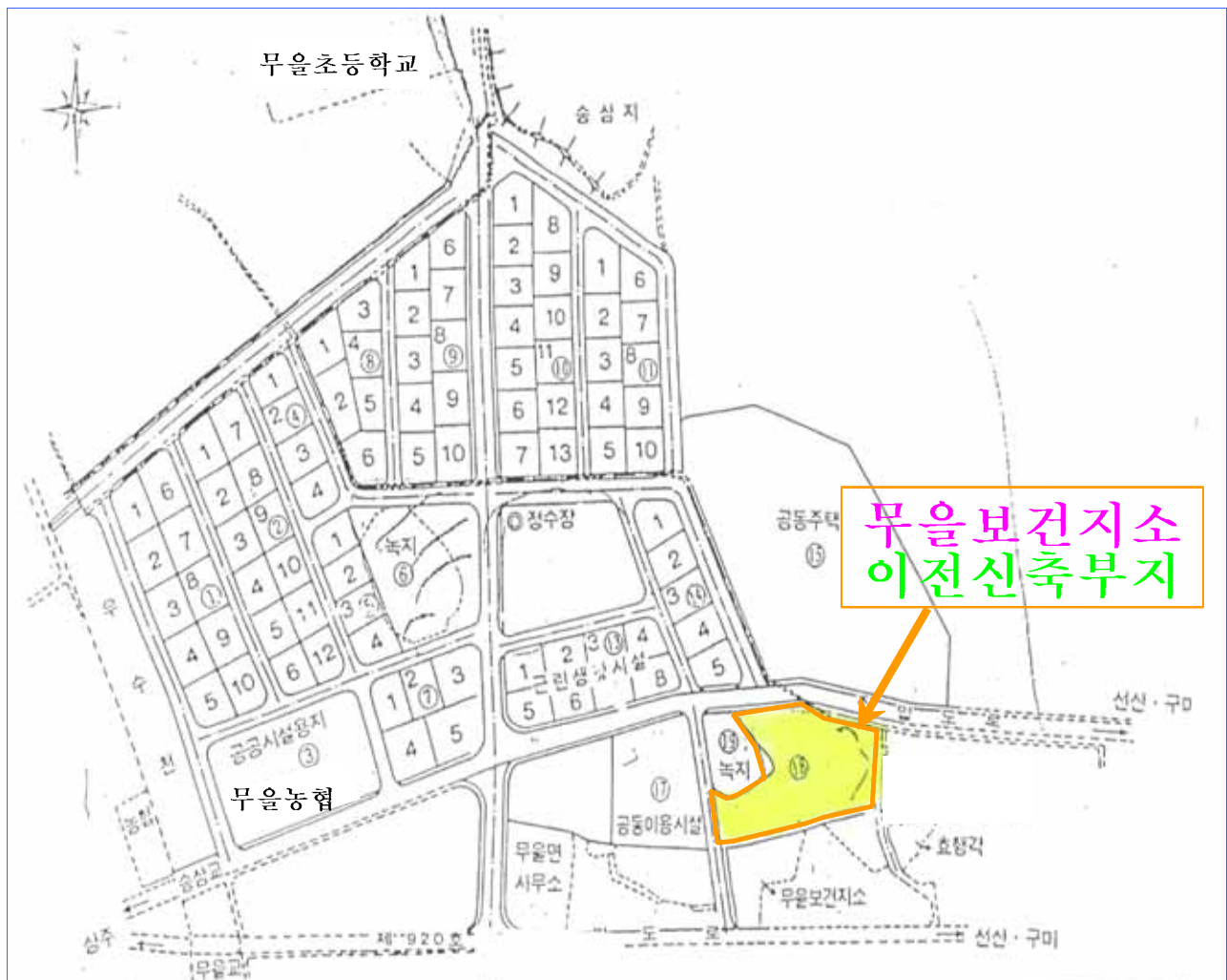
취득(신축)대상 건물

□ 재산의 표시

○ 건물($337.2m^2$)

▶ 구미시 무을면 송삼리 808-2번지 위지상 면적 : $337.2m^2$ (지상 2층)

□ 위치도



무을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현황

□ 현황 사진



2005년도 처분(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천원, m²)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 희망자 주 소, 성 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20필지	21,878	325,726				
1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49	1,406	19,262	2005년 하반기	구미오성문화재단 잔여농지 매각후 현금 출연	수의계약 및 공개경쟁 입찰	공시 지가
2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49-3	168	2,150	"	"	"	"
3	답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2	1,116	15,624	"	"	"	"
4	답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3	1,486	20,804	"	"	"	"
5	답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4	2,295	32,130	"	"	"	"
6	답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1012	1,434	17,782	"	"	"	"
7	답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28	2,182	31,639	"	"	"	"
8	전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29	2,139	31,016	"	"	"	"
9	답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33	1,607	23,302	"	"	"	"
10	답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34	2,625	38,063	"	"	"	"
11	전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35	2,740	44,114	"	"	"	"
12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2	96	1,814	"	"	"	"
13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5	477	9,015	"	"	"	"
14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6	20	378	"	"	"	"
15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7	106	2,003	"	"	"	"
16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8	650	12,285	"	"	"	"
17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9	109	2,060	"	"	"	"
18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10	487	11,347	"	"	"	"
19	임야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11	81	1,782	"	"	"	"
20	답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635-1	654	9,15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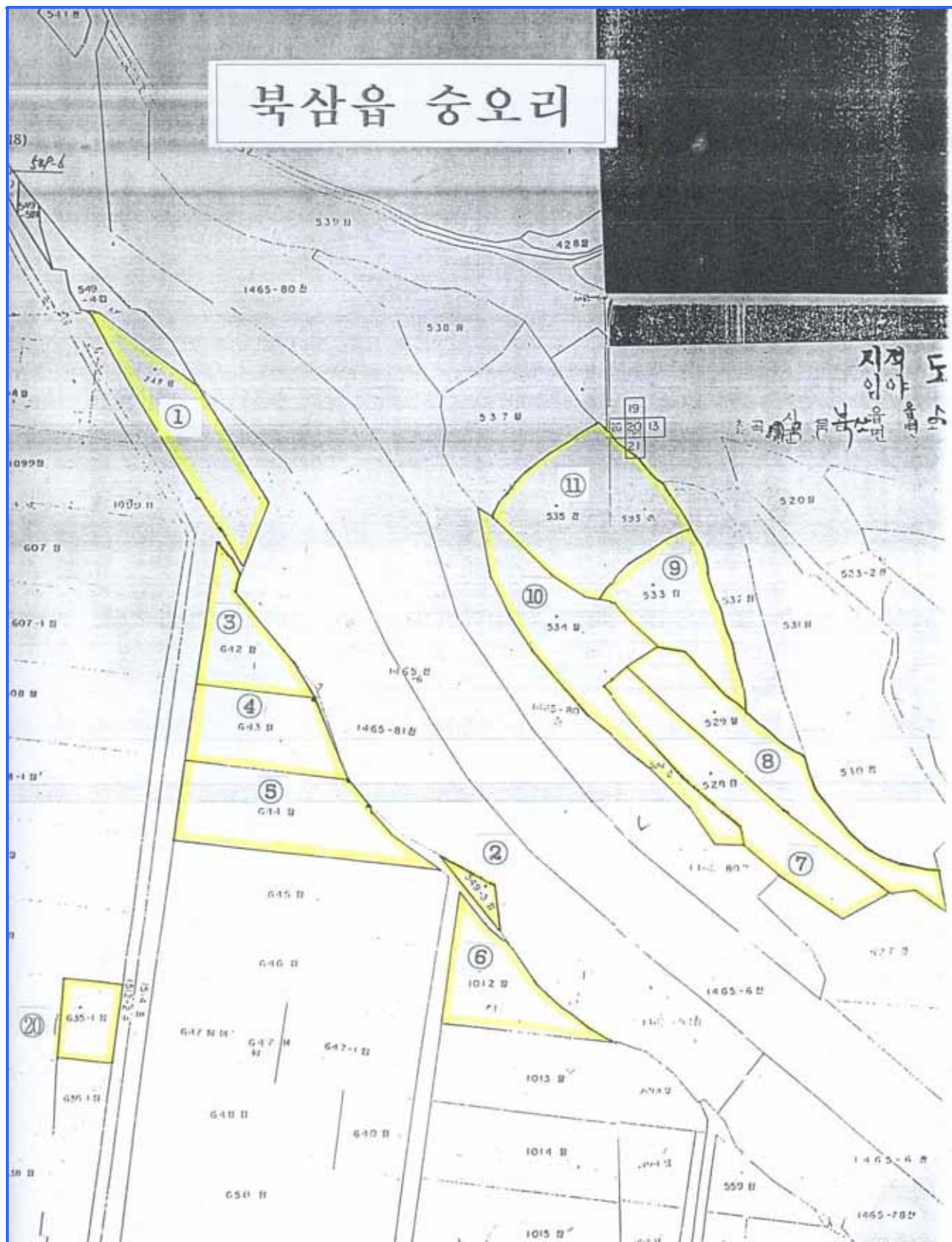
처 분 (매 각)대 상 토 지

□ 재산의 표시

○ 토 지(21,878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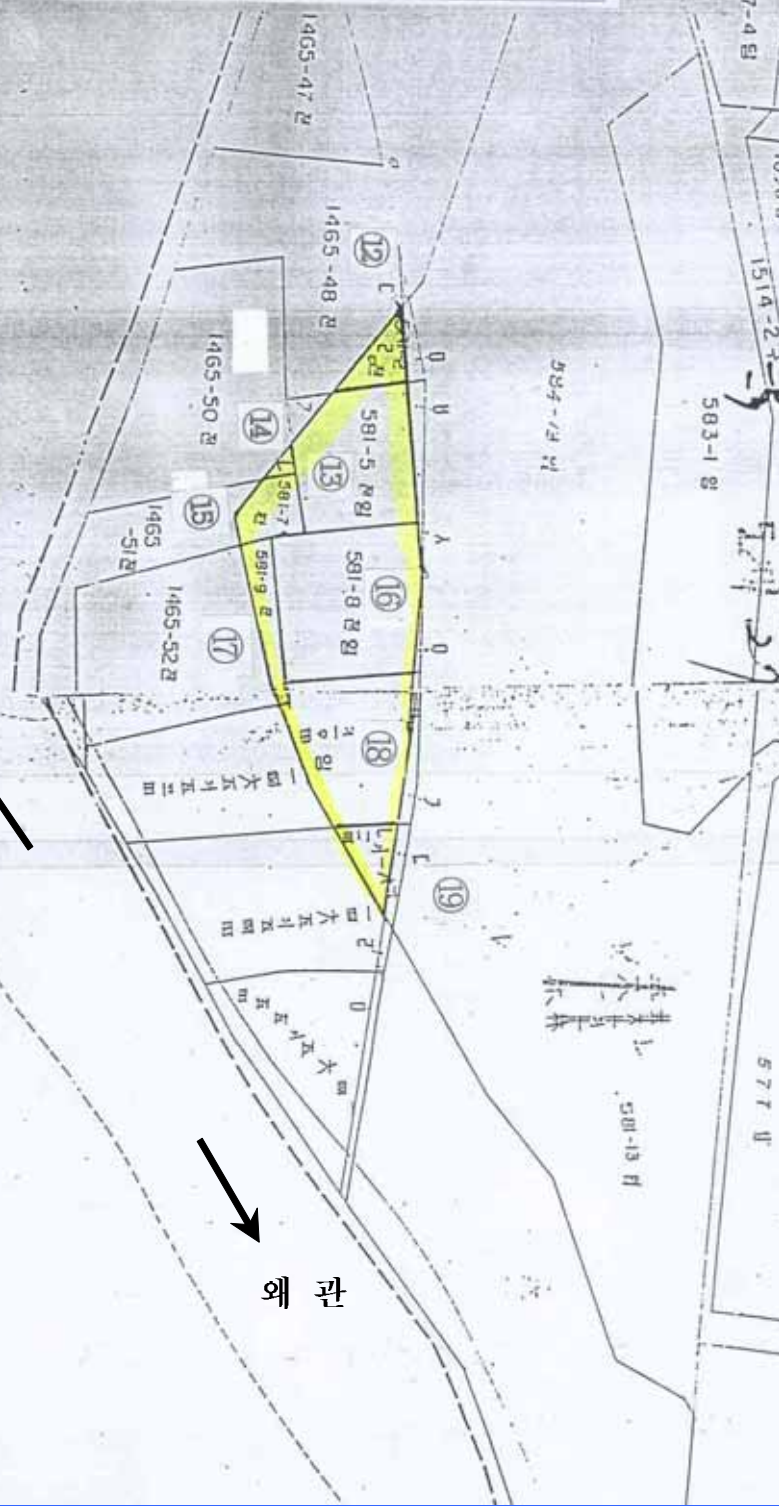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49번지	임	면적 : 1,406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49-3번지	임	면적 : 168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2번지	답	면적 : 1,116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3번지	답	면적 : 1,486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4번지	답	면적 : 2,295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1012번지	답	면적 : 1,434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28번지	답	면적 : 2,182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29번지	전	면적 : 2,139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33번지	답	면적 : 1,607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34번지	답	면적 : 2,625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35번지	전	면적 : 2,740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2번지	임	면적 : 96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5번지	임	면적 : 477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6번지	임	면적 : 20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7번지	임	면적 : 106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8번지	임	면적 : 650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9번지	임	면적 : 109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10번지	임	면적 : 487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581-11번지	임	면적 : 81m ²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송오리 635-1번지	답	면적 : 654m ²

□ 위 치 도



북삼읍 송오리

북삼읍 송오리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1-10
581-11
581-12
581-13
581-14
581-15
581-16
581-17
581-18
581-19
581-20
581-21
581-22
581-23
581-24
581-25
581-26
581-27
581-28
581-29
581-30
581-31
581-32
581-33
581-34
581-35
581-36
581-37
581-38
581-39
581-40
581-41
581-42
581-43
581-44
581-45
581-46
581-47
581-48
581-49
581-50
581-51
581-52
581-53
581-54
581-55
581-56
581-57
581-58
581-59
581-60
581-61
581-62
581-63
581-64
581-65
581-66
581-67
581-68
581-69
581-70
581-71
581-72
581-73
581-74
581-75
581-76
581-77
581-78
581-79
581-80
581-81
581-82
581-83
581-84
581-85
581-86
581-87
581-88
581-89
581-90
581-91
581-92
581-93
581-94
581-95
581-96
581-97
581-98
581-99
581-100



김 천

예 관

□ 현황사진



① 철곡군 북삼읍 송오리 549 (임, 1,406㎡)



② 철곡군 북삼읍 송오리 549-3 (임, 168㎡)



③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2(답, 1,116㎡) ④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3(답, 1,486㎡)
⑤철곡군 북삼읍 송오리 644(답, 2,295㎡)



⑥철곡군 북삼읍 송오리 1012 (답, 1,434㎡)



- ⑦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28(답, 2,182㎡) ⑧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29(전, 2,139㎡)
 ⑨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33(답, 1,607㎡) ⑩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34(답, 2,625㎡)
 ⑪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35(전, 2,740㎡)



- ⑫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81-2(임, 96㎡) ⑬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81-5(임, 477㎡)
 ⑭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81-6(임, 20㎡) ⑮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81-7(임, 106㎡)
 ⑯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81-8(임, 650㎡) ⑰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81-9(임, 109㎡)
 ⑱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81-10(임, 487㎡) ⑲칠곡군 북삼읍 송오리581-11(임, 81㎡)



㉔철곡군 북삼읍 송오리 635-1(답, 654㎡)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 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재정법 제 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 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 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 제곱미터 이상)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삭제 1995.11.15>

③<삭제 1995.11.15>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